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53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9. 1.(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배재억의원외6인】
2.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3.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5.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배재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6. 8.
발 의 자 : 배재억,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이강태, 유정자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함.

2.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참고사항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2026. 4. 22.

2) 성별영향평가 : 2026. 4. 22.

3) 입법예고 : 2026. 7. 8. ~ 7. 28.

4) 조례규칙 심의 : 2026. 8. 2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2024. 1. 2.>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라. 작성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및 제6조(의회 동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2) 추진 필요성

-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실 공사 및 인명 사고 방지
- 방대한 현장 조사와 전문 공정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극대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처리
-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 면적조사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사업 정산 및 사업 분석, 결과보고, 자료제공·입력 등
- 상기 사항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라. 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2027 ~ 2029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면심의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약 468,280,000원(국 50%, 도 15%, 군 35%)
- 산출근거 : 2027년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지특 예산 내역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석면 관련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업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처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종합 판단

2026년 8월 13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사무의 민간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됨.

3. 향후계획

가.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2027. 1.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2027. 2.

다.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2027. 3.

4. 참고자료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6조(의회 동의)

마.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관련법령 발췌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

Ⅲ. 사업추진 절차 중 사업자 선정

2. 사업 추진방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에 따라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5년간의 비용추계이며, 위탁수수료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8%로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1차년도는 2027년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지특 예산 내역이며
2차년도부터 매년 인상률 3%(경상가격)을 반영함.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입	○국비(지특)	234,140	241,164	248,399	255,851	263,527	1,243,081
	○도비	70,242	72,349	74,520	76,755	79,058	372,924
	소계(a)	304,382	313,513	322,919	332,606	342,585	1,616,005
세출 (b)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468,280	482,328	496,798	511,702	527,054	2,486,162
□ 총 비용(a-b)		- 163,898	- 168,815	- 173,879	- 179,096	- 184,469	- 870,157

4. 재원조달 방안 : 지특 50%, 도비 15%, 군비 35%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지특)	234,140	241,164	248,399	255,851	263,527	1,243,081
도비	70,242	72,349	74,520	76,755	79,058	372,924
군비	163,898	168,815	173,879	179,096	184,469	870,157
합계	468,280	482,328	496,798	511,702	527,054	2,486,162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환경과 폐기물관리팀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7년 기준)

구 분		지원금액	물량(동)	금 액	비 고
슬레이트 철거	주택	3,238,400원	95	307,648,000	
	비주택	4,968,000원	12	59,616,000	
지붕개량		5,777,600원	11	63,553,600	
위탁수수료 (8%)				37,462,400	
합 계				468,280,000	

※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업물량 변동 가능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정 (안 제15조)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시 재열람공고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

다.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 허용용도 신설 (안 제31조 및 별표 22의2)

라.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안 제50조)

마. 조례별표 개정

- 농업식품기본법 및 수산업기본법 분리제정에 따른 단서조항 개정 (안 별표 16, 22)
-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허용 (안 별표 17)
-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삭제 (안 별표 2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4827(2026.4.22.))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지원과-21675(2026.4.14.))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6.05.21. ~ 06.1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이내 또는”을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으로, “이내의”를 “이내(여러 차례에 결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절토”를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로 한다.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제1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1항”을 “영 제78조”로, “자연취락지구안”을 “취락지구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의2와 같다.

제50조제5호 중 “이하”를 “이하(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2호마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별표 17] 제2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2] 제2호마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

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별표 2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7]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의제를 포함한다)를 신청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

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가. ----------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 이내(여러 차례에 결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	------- 영 제78조 ---------- ---------- -------- 취락지구안----------

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의2와 같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이하(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바. ~ 파. (생 략)	바. ~ 파. (현행과 같음)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 하. (생 략)	파. ~ 거. (현행 타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

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 거. (생 략)	바. ~ 거. (현행과 같음)

□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 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별표 27]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현 행	개 정 안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가. 「도로법」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삭 제>

할 것.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5호 이상 10호 미만 : 350미터

2) 5호 미만 : 200미터

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지정국가유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발전시설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입목축적은 성주군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사. 자연의 보전,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에 공익

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거리기준에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 제>
3. 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4. 3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 제>
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2025.12.31.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가 아래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2) 성주군에서 3년 이상 관련 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한 자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한 경우	
5. 4호에 따른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관련법령 발췌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15조 관련)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공작물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17조의2 관련)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7. 1.>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31조 관련)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50조 관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관련법령 발췌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 16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발췌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 17 관련)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관련법령 발췌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별표 22 관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발췌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22조의2 관련)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관련법령 발췌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관련법령 발췌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안 별표 27호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6. 9. 18.]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함

○ 이에 따라 성주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임.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 위 치 : 성주군 전역(1개 읍, 9개 면)

나. 의견청취 내용

- 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의 여건·특성, 농촌공간구조 분석,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기본구상

・농촌공간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등

- 부문계획,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계획

다. 세부내용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재생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주요 내용
중첩지역	성주읍	- 군 내부적으로 9개 면 지역이 높은 의존도를 보여 최상위 정주중심지로 3개 재생활성화지역의 중첩지역으로 설정
북부 재생활성화지역	(성주읍),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 대규모 참외 재배지 스마트팜 집중 육성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경제 발전 기반 구축 - 사드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 연계 및 생활SOC 복합화·기능 확대를 통한 정주 회복 - 주거 환경 개선 및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 농촌환경 도모
동부 재생활성화지역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 및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대응 농업 경쟁력 확보 - 농촌 자원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순환 체계 구축 - ICT 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서부 재생활성화지역	(성주읍), 수륜면, 가천면, 금수강산면, 대가면	- 급격한 고령화 및 성주역 유치 등에 의한 인구 변화 전망을 고려한 서비스 기반 확충 - 귀농·귀촌 및 청년 유입을 위한 통합 정착 지원체계 도입 및 인재 양성 도모 - 가야산 중심 관광 클러스터 형성 및 광역 교통 연계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유형		후보군	위치
계		**40개소**	-
정주형	농촌마을보호지구	14개소	- 성주읍(3), 선남면(3), 용암면(2), 수륜면(2), 가천면(1), 대가면(1), 초전면(1), 월항면(1)
산업형	농촌산업지구	4개소	- 선남면(2), 월항면(2)
	축산지구	1개소	- 용암면(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7개소	- 성주읍(1), 선남면(1), 용암면(2), 수륜면(1), 대가면(1), 월항면(1)
	재생에너지지구	5개소	- 성주읍(1), 수륜면(3), 초전면(1)
관리형	농촌경관지구	4개소	- 성주읍(1), 가천면(1), 금수강산면(1), 월항면(1)
	농업유산지구	-	-
	특성화농업지구	5개소	- 성주읍(1), 수륜면(2), 가천면(1), 벽진면(1)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과

○ 2025. 02. : 착수보고

○ 2025. 04.~05. : 행정협의회,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초농촌 공간정책지원기관 구성

○ 2025. 06. : 1차 기초정책심의회 개최

○ 2025. 07. : 성주군 행정협의 및 업무보고

○ 2025. 08.~09. : 읍·면별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설문조사 추진

○ 2025. 10.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1차)

○ 2025. 10.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통합컨설팅

○ 2025. 11.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2차)

○ 2025. 12.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3차)

○ 2026. 01. : 성주군 행정 및 실과협의

○ 2026. 02. : 1차 행정협의회 개최

○ 2026. 02.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4차)

○ 2026. 04.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5차)

○ 2026. 05. : 2차 행정협의회 개최

○ 2026. 05.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6차)

○ 2026. 07. : 군수보고

○ 2026. 07. : 의회 정책협의회 보고

○ 2026. 08. : 주민공청회 개최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 08.~09. : 군의회 의견 청취

○ 2026. 09. : 2차 기초정책심의회 개최

○ 2026. 10.~11. : 경상북도 및 농림부 협의

○ 2026. 12. : 도 광역정책심의회 개최

○ 2027. 01. : 기본계획 승인·고시

【참고자료】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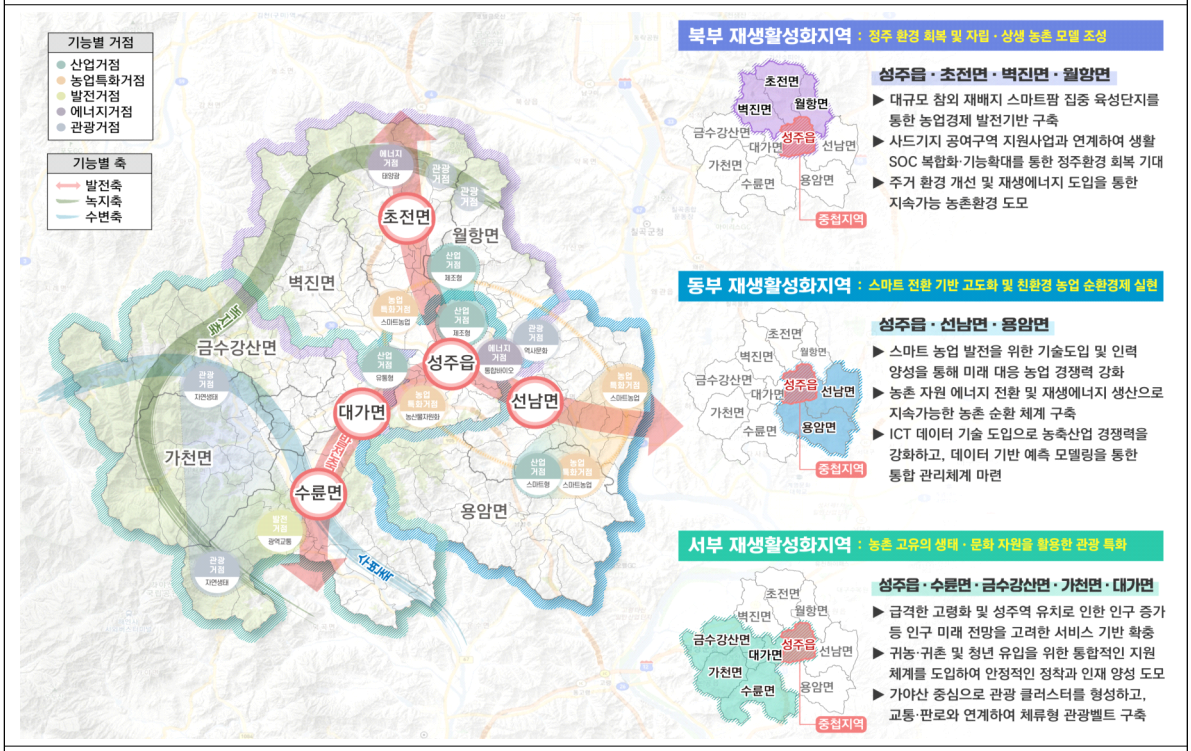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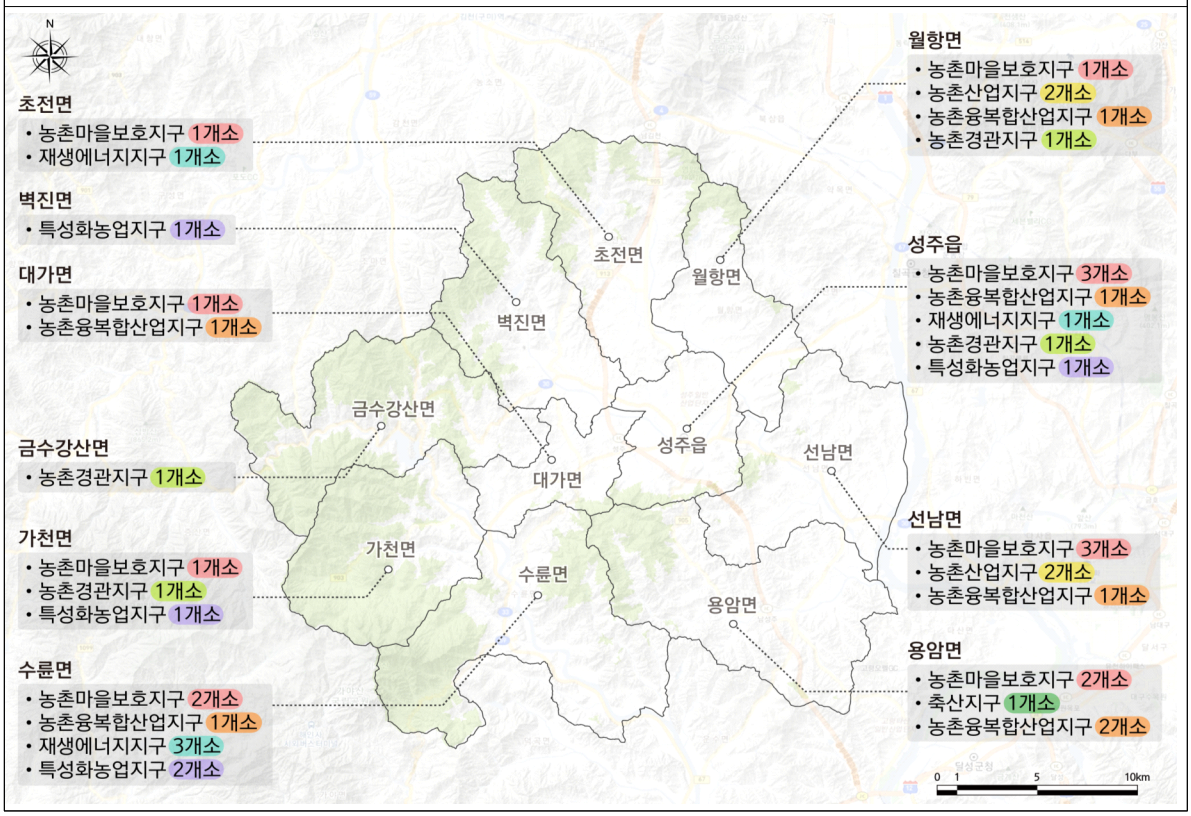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9. 1.(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성 주 군 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

나.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및 제6조(의회 동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2) 추진 필요성

-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실 공사 및 인명 사고 방지
- 방대한 현장 조사와 전문 공정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극대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처리
-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 면적조사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사업 정산 및 사업 분석, 결과보고, 자료제공·입력 등
- 상기 사항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

라. 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2027 ~ 2029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면심의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간 약 468,280,000원(국 50%, 도 15%, 군 35%)
- 산출근거 : 2027년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지특 예산 내역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석면 관련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업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처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종합 판단

2026년 8월 13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사무의 민간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됨.

3. 향후계획

가.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2027. 1.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2027. 2.
다.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2027. 3.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철거 및 처리 과정에서 전문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슬레이트 처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정 (안 제15조)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시 재열람공고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

다.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 허용용도 신설 (안 제31조 및 별표 22의2)

라.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안 제50조)

마. 조례별표 개정

- 농업식품기본법 및 수산업기본법 분리제정에 따른 단서조항 개정 (안 별표 16, 22)
-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허용 (안 별표 17)
-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삭제 (안 별표 27)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에 맞춰 기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개발행위 및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함.

○ 이에 따라 성주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 및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임.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 위 치 : 성주군 전역(1개 읍, 9개 면)

나. 의견청취 내용

- 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의 여건·특성, 농촌공간구조 분석,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기본구상

・농촌공간구조 설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등

- 부문계획,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계획

다. 세부내용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전략

재생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주요 내용
중첩지역	성주읍	- 군 내부적으로 9개 면 지역이 높은 의존도를 보여 최상위 정주중심지로 3개 재생활성화지역의 중첩지역으로 설정
북부 재생활성화지역	(성주읍),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 대규모 참외 재배지 스마트팜 집중 육성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경제 발전 기반 구축 - 사드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 연계 및 생활SOC 복합화·기능 확대를 통한 정주 회복 - 주거 환경 개선 및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 농촌환경 도모
동부 재생활성화지역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 및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대응 농업 경쟁력 확보 - 농촌 자원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순환 체계 구축 - ICT 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서부 재생활성화지역	(성주읍), 수륜면, 가천면, 금수강산면, 대가면	- 급격한 고령화 및 성주역 유치 등에 의한 인구 변화 전망을 고려한 서비스 기반 확충 - 귀농·귀촌 및 청년 유입을 위한 통합 정착 지원체계 도입 및 인재 양성 도모 - 가야산 중심 관광 클러스터 형성 및 광역 교통 연계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유형		후보군	위치
계		**40개소**	-
정주형	농촌마을보호지구	14개소	- 성주읍(3), 선남면(3), 용암면(2), 수륜면(2), 가천면(1), 대가면(1), 초전면(1), 월항면(1)
산업형	농촌산업지구	4개소	- 선남면(2), 월항면(2)
	축산지구	1개소	- 용암면(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7개소	- 성주읍(1), 선남면(1), 용암면(2), 수륜면(1), 대가면(1), 월항면(1)
	재생에너지지구	5개소	- 성주읍(1), 수륜면(3), 초전면(1)
관리형	농촌경관지구	4개소	- 성주읍(1), 가천면(1), 금수강산면(1), 월항면(1)
	농업유산지구	-	-
	특성화농업지구	5개소	- 성주읍(1), 수륜면(2), 가천면(1), 벽진면(1)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과

○ 2025. 02. : 착수보고

○ 2025. 04.~05. : 행정협의회,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기초농촌 공간정책지원기관 구성

○ 2025. 06. : 1차 기초정책심의회 개최

○ 2025. 07. : 성주군 행정협의 및 업무보고

○ 2025. 08.~09. : 읍·면별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설문조사 추진

○ 2025. 10.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1차)

○ 2025. 10.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통합컨설팅

○ 2025. 11.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2차)

○ 2025. 12.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3차)

○ 2026. 01. : 성주군 행정 및 실과협의

○ 2026. 02. : 1차 행정협의회 개최

○ 2026. 02.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4차)

○ 2026. 04.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5차)

○ 2026. 05. : 2차 행정협의회 개최

○ 2026. 05. : 농촌공간계획 광역지원기관 전문가 컨설팅(6차)

○ 2026. 07. : 군수보고

○ 2026. 07. : 의회 정책협의회 보고

○ 2026. 08. : 주민공청회 개최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 08.~09. : 군의회 의견 청취

○ 2026. 09. : 2차 기초정책심의회 개최

○ 2026. 10.~11. : 경상북도 및 농림부 협의

○ 2026. 12. : 도 광역정책심의회 개최

○ 2027. 01. : 기본계획 승인·고시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성주읍을 중심으로 북부·동부·서부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본 기본계획(안)은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경상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